

문 21.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.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(가) 시간 이내에 실시한다.
- 국방부장관은 (나)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.
-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(다) 일 전까지 전자 문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.
-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(라)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.

	<u>(가)</u>	<u>(나)</u>	<u>(다)</u>	<u>(라)</u>
①	160	항공교통관제사	3	전화 또는 방문 통보
②	150	경찰관	5	소집통지서의 전달
③	160	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	5	전자문서 전달
④	150	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	3	전화 또는 방문 통보

문 22.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예비군이 출동하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② 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때에 예비군이 출동하지 아니하고는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.
-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·탄약·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 그 경찰서장은 「군수품관리법」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.
-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·탄약·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·보관하여야 한다.

문 23.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2021. 2. 1. 무장폭도가 강원도 A 지역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였다.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 소유의 주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.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乙에게 발급하였다.

- ① 甲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수임군부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강원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이 2021. 3. 10. 乙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2021. 5. 10.까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乙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2021. 3. 31.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2021. 4. 30.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24.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. 甲은 그 부상으로 인해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, 甲의 유족으로는 乙만이 있다.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甲에게는 「군인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공제한다.
- ㄴ. 乙은 보상 대상자로서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분된다.
- ㄷ.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ㄹ.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의 사망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ㄹ
- ② ㄴ, ㄷ
- ③ ㄱ, ㄴ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문 25.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甲은 2021. 3. 10.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. 이로 인해 甲은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 없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. 甲은 민간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5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. (통계청이 해마다 조사·공표하는 2020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임)

- ① 甲은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,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.
- ②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통지를 하고,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은 400만 원이다.
- ④ 甲이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,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수탁경찰서장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.

문 26. 예비군법령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뿐만 아니라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정기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